

1

Q-code 입력 관련 FAQ

1. 정보 입력, 파일 업로드 등 Q-code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?

- 안내 및 주의사항,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,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Q-code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한지?

- Q-code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,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.
- 다만, Q-code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**항공기 탑승 전 Q-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을 완료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3. Q-code 입력 완료 시 발급되는 QR코드를 종이로 출력해서 입국 시 제출해도 되는지?

-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관리 공무원에게 **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제시**하시거나 **종이로 인쇄한 QR코드를 제시**하시어 신속한 검역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. Q-code시스템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았는데, 입력한 내용의 서류를 입국시 지참해야 하는지?

- 정보의 오입력, QR코드의 분실, 검역관 추가확인 등에 대비하여 검역관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PCR음성확인서,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국시 **별도로 지참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5. 인천공항 입국자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이용할 수 있나요?

- 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.

2

유효한 『예방접종증명서』 관련 FAQ

1.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?

- 국내·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* 2차(안센은 1차) 접종 후 14~180일 이내이거나 3차(부스터샷) 접종한 자
- * 화이자, 안센, 모더나, AZ, 코비실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(베이징주), 시노백, 코백신, 노바백스('22.2.14.현재)

2. 예방접종 내역만 입력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?

- 정보입력 및 증명서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다음 입력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- 단, 대한민국에서 접종을 하셨거나 대한민국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'접종내역 조회(불러오기)'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3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"예방접종증명서"를 업로드해도 되는지?

-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단, 증명서가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입국시 검역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일 경우 인증 불요

4. 해외 접종 이력을 국내에서 이전에 등록한 경우,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자동 연계가 되는지?

-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이력을 이전에 등록(확인서 발급)하신 경우,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사전입력 시스템에 '접종내역 조회(불러오기)'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연계가 가능합니다.

5. WHO 긴급 승인 백신 이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Q-code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지?

- 예방접종 정보 입력 시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*에 한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그 외 백신은 입력이 불가합니다.
- * 화이자, 안센, 모더나, AZ, 코비실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(베이징주), 시노백, 코백신, 노바백스('22.2.14.현재)

6.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한민국에서 접종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?

-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셨거나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완료 이력을 이전에 등록한 입국자는 3월 2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.
-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.

7. 2차 접종 후 확진되어,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?

-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(안센은 1차 접종)는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(접종 후 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)됩니다.
- 입국시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(PCR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 등)를 검역관에게 별도로 제출(국문 또는 영문)해주시기 바랍니다.

8.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3.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?

- 국내에 예방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어 검역관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1·2차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, 해외 3차 접종 증명서류를 입국 후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시면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.

* 단, 국내 예방접종 DB에 1차 접종 이력만 등록된 사람은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

3

유효한 『격리면제서』 관련 FAQ

1.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?

-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(www.ncov.mohw.go.kr) → ②공지사항 → ③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→ ④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는데 [등록조회]가 되지 않습니다.

- 격리면제서 발급 후 시스템 연계에는 일부 시간이 소요됩니다. [등록조회]가 안 되시는 분은 입국시 검역관에게 격리면제서를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4

유효한 『PCR 음성확인서』 관련 FAQ

1. PCR검사 내역만 입력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?

- 정보입력 및 확인서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다음 입력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2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“PCR음성확인서”도 인정되는지?

- “PCR 음성확인서”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.
- 단,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)를 함께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.
 - 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일 경우 인증 불요

3. “PCR음성확인서”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?

- PCR음성확인서는 유전자 증폭 검출(NAATs, 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됩니다.
 - 항원(Antigen, AG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와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

4. "PCR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?

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* (예시) '22.1.21. 10:00 출발한 경우에는 22.1.19.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(2일)

6.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"PCR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-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절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
- *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

5. "PCR음성확인서" 제출 제외 대상은?

-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입국 당시 "대한민국 선원 소지자"에 한함)
 - ※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'내국인'·'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(212~)
-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(본인 입증책임)
 - 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
 - ※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